#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황명선·한준호·조승래

이재관 • 박민규 • 송재봉

박희승 · 서미화 · 강득구

주철현 · 모경종 · 염태영

이해식 • 홍기원 • 장경태

(159])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또한 인삼 생산자의 농산물우수관리(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삼전문연구기관 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 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 나.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신설).
- 다. 인삼 경작농가의 농작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 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 2항 신설).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를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 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인삼 및 인삼류 를 공급하며,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로 한다.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4조의2 및 제7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 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제1장에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삼 및 인삼류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의 절차 ·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표준인삼경작방법"을 "표준인삼경작방법과 수확 후 관리기술(이하 "표준인삼경작방법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을 "표준인삼경작방법등"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표준인삼경작방법등을 고시함에 있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반영하여 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	제1조(목적)
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인삼</u>	<u>인삼</u>
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
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
	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인삼 및
	인삼류를 공급하며,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u>&lt;신 설&gt;</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
	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u>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하여 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u>제3조</u> · <u>제3조의2</u> (생 략)	<u>제4조</u> ・ <u>제4조의2</u> (현행 제3조 및
	제3조의2와 같음)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신 설>

 제4조 (생 략)

 <신 설>

#### <삭 제>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제7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 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삼 및 인삼류에 관 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 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 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 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

   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 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조(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
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

<신 설>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농 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 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 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하 여 <u>표준인삼경작방법</u>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u><신 설></u>

-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
<u>영할 수 있다.</u>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범위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1	-


- -- <u>표준인삼경작방법과 수확</u> 후 관리기술(이하 "표준인삼경 작방법등"이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표준인삼경 작방법등을 고시함에 있어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 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 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u>③</u>	 	 	 	 

한다) 및 조합은 인삼경작자에 게 <u>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u>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 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 한 자
  - 2. ~ 10. (생략)
  - ②·③ (생 략)

<u>표준인삼경작방법등</u>
<u>.</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1. <u>제8조제4항</u>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